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42
----------	-----

2024. 4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4월 23일

-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종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자율소방대 구성, 등록, 지원, 자율소방대 운영 및 운영협의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)
- 자율소방대원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자율소방대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도지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2020년도 이후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에서는 증평장뜰시장('20.10.27.), 청주육거리종합시장('21.4.14.), 괴산전통시장('22.1.13.), 청주원마루시장('22.5.31.) 등 화재피해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노후화된 전기시설과 점포들이 밀집해 대형화재 발생이 가능하여 적극적 소방안전대책이 요구됨.
- 따라서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는 상인회의 사업 중 “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”를 명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로 법령의 범위에서 “자율소방대”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총 11개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자율소방대의 구성, 등록, 지원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자율소방대”의 뜻을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자율소방대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율소방대의 구성, 등록,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8조는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도모하도록 규정함.
 - 안 제11조는 자율소방대의 교육·훈련, 지도·감독 등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자율소방대의 화재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‘24. 4. 12. ~ ‘24. 4. 1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“전통시장 자율소방대”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관할 소방서장의 교육·훈련 및 지도·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, 자율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.
2. “자율소방대”란 충청북도 행정구역 내 등록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.

가.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

나.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

다.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

라.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

마.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예방 홍보

바.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율소방대 구성) ① 전통시장의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율소방대에는 대장, 부대장, 대원을 둔다.

③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, 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,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5조(자율소방대 등록)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율소방대 지원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자율소방대 운영) 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.

② 대장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구성·운영)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, 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·훈련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원에게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
2.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
3.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·운영
4.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 및 지도·감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(제5조 관련)

시장명		
주소		
대장	성명	연락처
부대장	성명	연락처
대원수	명	
「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충청북도지사 귀하		
첨부	1.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	

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

[illegible]

[별지 제2호서식]

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(제5조 관련)

[illegible]